

#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염동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22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8.

발의자 : 염동열 · 박대출 · 김진태

이정현 · 김현아 · 박명재

나경원 · 한선교 · 황주홍

이은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부는 「통계법」 및 「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」에 따라 통계청 승인을 받아 교육기본통계조사를 196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,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대하여 관련법에 근거는 없음.

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계조사방식의 변화와 교육통계 및 정보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고 통계조사의 관리와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므로, 학교교육 관련 통계의 체계적 조사와 공공 DB 데이터 연계, 통계정보의 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, 통계조사의 협조, 유관 통계자료의 연계협력, 자료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3 신설).

##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3(교육통계조사 등)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교육부장관은 누구든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특정의 법인이나 단체가 식별되는 자료에 대한 요구 및 제공은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공개한 항목에 한정한다.

⑤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

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.

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거나 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의 자료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
2.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

⑧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, 구체적인 내용,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11조의3(교육통계조사 등) ①</p> <p>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③ 교육부장관은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④ 교육부장관은 누구든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</p>

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특정의 법인이나 단체가 식별되는 자료에 대한 요구 및 제공은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공개한 항목에 한정한다.

⑤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.

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거나 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의 자료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

기관의 교직원

2.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

업생

(8)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의 조

사대상, 구체적인 내용, 절차

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
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